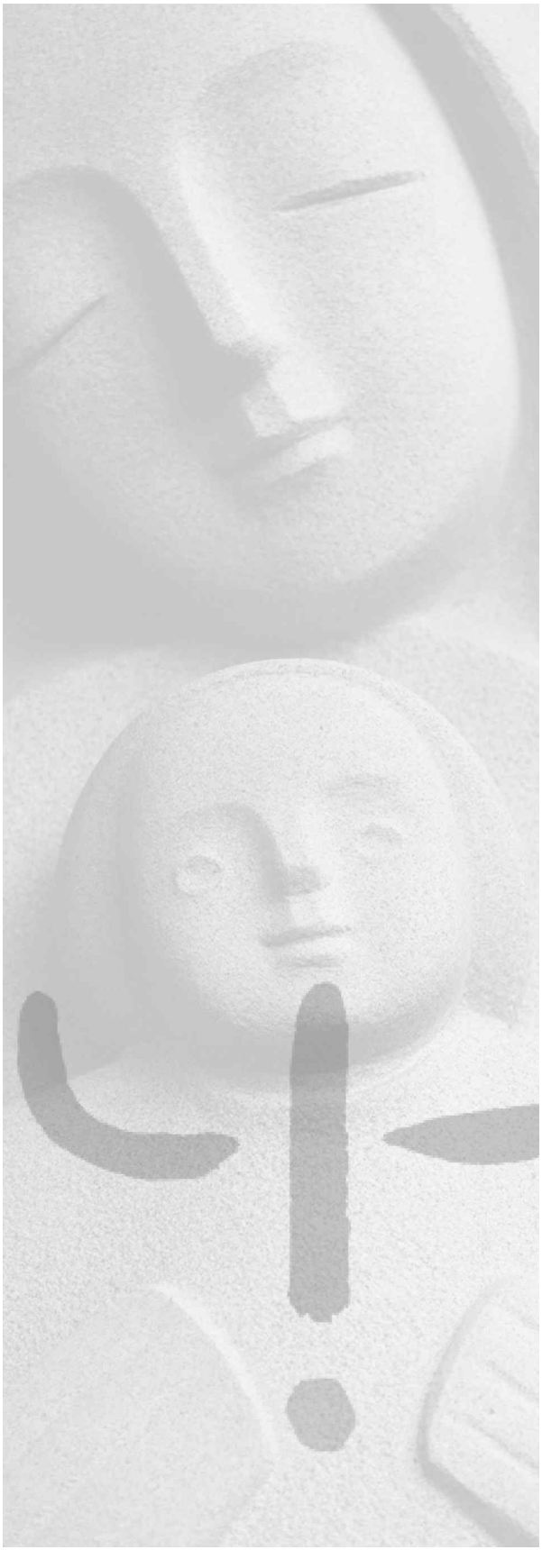

VI

학생생활

■ **성신교정**

1. 학생회 회칙
2. 장학금 지급규정

■ **성심교정**

1. 총학생회 회칙
2. 학생과외활동
3. 학생상벌규정
4. 장학금
5. 학생병사안내
6. 의료복지제도

■ **성의교정**

1. 학생준칙
2. 학생준칙 시행세칙
3. 장학금
4. 학생병사안내
5. 의료복지제도

성신교정

1. 학생회 회칙

전 문(前文)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학생회」는 진리·사랑·봉사라는 교육이념에 따라 사제(司祭)요, 스승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적(知的), 사목적, 영성적으로 준비된 참된 목자와 평신도(平信徒) 지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 구원(救援)과 인간의 존엄성을 전하는 보편 교회에 일익(一翼)을 담당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 회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함).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자치 활동을 통한 진리 탐구와 복음화를 위한 실천적 신앙 성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 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會員)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재학생(在學生)으로, 대학원생(大學院生)을 제외한 학부생에게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選擧權)과 피선거권(被選擧權)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自治)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또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학교 운영에 참여) 본 회는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 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5.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지도교수) 본 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자문(咨文)을 구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두며, 그 직무는 교학부처장 교수의 당연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8조(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를 대표하는 최고 기구이다.

제9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1조(권한) 학생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사업 계획 및 중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본 회의 존립(存立)이나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결권(議決權)을 갖는다.

제12조(회의) 1. (구분)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운영한다.

2. (의사정족수) 학생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의결정족수) 학생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학생회장이나 집행부의 발의 또는 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6. (총회공고) 학생총회 소집시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임시총회 소집시는 2일 이상 공고한다.

제13조(회원 전체 투표) 본 회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事案)이 발생(發生)할 경우, 학생총회와 별도로 학생회장 또는 집행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회원 전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과반수 투표 참가와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14조(지위)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제15조(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자치 활동과 학술 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진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대표로서 본 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학생총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4. 집행부의 부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5. 본 회 회원의 중의(衆意)를 대표(代表)하여 학생 자치(自治) 활동에 관계(關係)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결산안,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학생총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 중 본 직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8. 본 회의 회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새로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포한다.
9. 집행부의 의장으로 각 부서는 물론 통학생회에 대한 회계 및 행정 감사를 할 수 있다.
10.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11. 본 회의 중대한 사항을 회원 전체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부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부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집행부에 관여한다.
2. 학생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의 유고기간동안 그 권한(權限)과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하며,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학기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

제17조(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유고)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유고시 총무부장이 임시 대표를 맡고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當選者) 공고일 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단, 이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한기 이상일 경우에 한다.

제18조(임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해당 년 취임일(就任日)부터 익년(翌年) 이임일(移任日)까지로 한다.

제 4 장 집행부

제19조(지위) 집행부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0조(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하며, 부학생회장, 부장, 차장 및 통학생부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제21조(부장 및 차장) 1. (임무) 집행부의 각 부장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관장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2. (선출) 집행부의 각 부장 및 차장의 선출은 학생회장 취임년도의 3학년 재학생 중에서 학생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제22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총회에 업무계획(業務計劃) 및 활동계획을 보고(報告)하고 그에 따른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활동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학생총회에 제출한다.

3, 본 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特別)기구를 설치(設置)할 수 있으며, 부서(部署)의 증설이나 폐지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직 : 집행부서의 업무) 집행부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본 회의 사무·회계·운영·기획 및 조정(調定)에 관한 업무와 집행부와 자치기구의 재정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부 : 본 회의 행사 기획·운영·조정에 관한 업무와 집행부 및 자치기구의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부 : 홍보부는 기획부의 산하로 두며 본회 제반 업무에 관한 홍보와 대외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4.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 : 동아리들을 대표하는 부서로서 학술제를 담당하며, 제39조에 의거하여 동아리를 설립, 폐부한다.

5. 신학원부: 신학원과 연계하여 과학부, 문화부, 체육부, 학술부로 나뉘어서 신학원과 협조, 보조해야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통학생부 : 본회와 관련된 자치(自治)기구인 통학생부의 운영과 그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의견조율(意見調律)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회의) 1. (구분) 집행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2. (정기 집행부회의) 정기 집행부회의는 월 2회로 한다.

3. (임시 집행부회의) 임시 집행부회의는 학생회장이나 부학생회장 또는 2인 이상의 부장의 요구로 소집된다.

4. (참관) 집행부 회의는 회원의 자유로운 참관(慘觀)이 허락되나, 특별한 경우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 5 장 통학생부

제25조(지위) 통학생부는 학생회장 직속에 있으며 전체 통학생들의 의결, 집행, 운영기구이다.

제26조(목적) 통학생(通學生)들의 원활한 학내생활을 지원하며 상호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여 배움과 친교의 생활을 조화시킴으로써 인간적, 그리스도인적 성숙을 도모하며 본 회를 이해와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구성)

1. 통학생부는 고유한 특성의 구성원들을 고려해 그 산하에 대표와 총무, 수사부, 수녀부, 일반 통학생부를 둔다.

2. 통학생부 대표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수사 및 수녀, 일반 통학생으로 선출된다.

3. 수사학생부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수도회 소속 남학생으로 구성된다.

4. 수녀학생부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수도회 소속 여학생으로 구성된다.

5. 일반통학생부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일반 통학생으로 구성된다.

제28조(임원) 통학생부의 임원은 전체대표 1인과 총무 1인, 수녀부 대표 1인, 수사부 대표 1인, 일반통학생부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1. 전체대표 : 통학생부를 대표(代表)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계획 및 통학생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체총무 : 통학생부의 전반적(全般的)인 실무(實務) 및 재정을 담당(擔當)하며, 각 회에서 제출한 예·결산을 취합(聚合), 관리한다.

3. 일반통학생부 대표 : 일반통학생부를 대표하고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수사부 대표 : 수사부를 대표하고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수녀부 대표 : 수녀부를 대표하고 수녀학생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본 회 내에서의 업무 및 지위) 1. 전체대표, 전체총무와 통학생부 대표 3인(수녀부, 수사부, 일반통학생부 대표)은 집행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본 회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2. 통학생 전체대표, 전체총무, 통학생부 대표 3인(수녀부, 수사부, 일반통학생부 대표)은 통학생부 대표단(代表團) 3인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집행부(執行部)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제31조(임원선거) 통학생부 산하의 대표와 총무, 수사부 대표와 수녀부 대표와 일반 통학생부 대표는 학생회장 선출 당해 3학년 재학생중 학생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단 수사부 대표는 당해 2학년도 가능하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3월부터 익년(翌年) 2월까지로 정하되 매학기 구분한다.

제34조(예산편성, 심의 및 집행) 1. 본 회의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編成)하고 회장단에서 조정하며 집행부 회의를 통해 심의 확정 의결한다.

2. 예산안 의결 이전에 불가피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집행부의 예산안 의결이 늦어질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 의결된 예산안에 가감(加減)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비) 본 회의 회비(會費)는 집행부에서 심의 확정하며,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이유(理由)가 없는 한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회비를 납부한다.

제36조(결산) 1. 본 회의 회비에 대한 결산은 총무(總務)부장이 대표(代表)로 하여 총괄적(總括的)인 결산을 집행부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2. 집행부는 매학기 초 예산의 집행을 심의하여, 학생총회에 그 결산을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제 7 장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

제37조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 신설과 명칭) 1. 기존 동아리 연합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동아리 연합회 회칙은 폐지된다.

2. 개별 동아리들을 대표하는 기구는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이하 동아리 기획부라함)에 위임된다.

제38조 (동아리 기획부 소속과 부장의 권한) 1. 동아리 기획부는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학생회에 속한다.

2. 동아리 기획부는 학술제를 담당한다.

3. 동아리 기획부 부장은 필요한 경우 동아리 대표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 (등록동아리 목적과 성격) 1. 등록동아리 활동의 주된 목적은 정규 교과 과정의 틀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학술, 문화, 예술 등의 탐구 활동을 통해 가톨릭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 사랑, 봉사의 정신을 배우고 실현함에 있어 폭 넓은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2. 등록동아리의 정체성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목적에 따라 학술 동아리와 활동 동아리로 분류된다.

제40조 (등록동아리 설립과 폐부) 1. 등록동아리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총 5명의 회원과 지도 신부 1명을 갖추며, 39조에 의거한 동아리 성격에 부합되어야하며, 소정의 신청 양식을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에 제출해야한다.

2. 39조 2항에 따른 등록동아리의 목적을 확립하는 것은 개별 동아리의 권한이다.

3. 등록동아리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동아리 지원 기획부에 제출 하고, 교학부처장에 보고한다. 교학부처장 보고 후 동아리는 폐부된다.

제41조 (등록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1. 등록동아리는 동아리의 목적과 지향에 상응하는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등록동아리는 1년에 한번 학교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3. 등록동아리 대표는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에 등록동아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등록동아리는 매 학기 시작할 때 동아리 활동 계획을 소정 양식에 맞추어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에 제출해야한다.

제 8 장 선 거

제42조(선거원칙) 본 회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이다.

제43조(선거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권(選擧權)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부생에게 주어진다.

제44조(피선거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피선거권은 본 대학 3학년 재학생에게 주어진다.

제45조(입후보 및 선출방법)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선거권(被選擧權)을 가진 자 중에서 회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 동반(同伴) 입후보한다.

2. 회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해야만 유효하다.

3. 후보자가 2조일 경우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4. 후보자가 3조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過半數)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가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5. 단독 후보일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6.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6조(선거 시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2학기 종강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집행

부의 논의를 거쳐 다른 시기에 옮겨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職務)를 수행(修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잔여(殘餘) 임기가 한 학기 이상이면 그 사유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補闕選擧)를 실시한다. 단,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학기 미만일 경우 제16조 2항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계승한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1. (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년 신학원생 1명과 통학생 1명으로 구성(構成)되며, 구성된 선거관리(選擧管理)위원 중 최고(最高)학년 1인을 선거관리(選擧管理)위원장으로 임명한다.

3. (소집 및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 전에 학생회장이 소집하며 선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49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해 정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50조(발의) 학생회장 또는 과반수(過半數) 이상의 집행부 구성원 또는 회원 1/5 이상의 동의로 회칙 개정을 발의한다.

제51조(의결 및 공포) 본 회의 회칙 개정의 의결 및 공포는 다음과 같다.

1. 회칙(會則) 개정(改定)이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은 집행부와 함께 개정안(改正案)을 마련하여 학생총회 개최 전 5일 이내에 공고(公告)하고 개정 내용에 관하여 1회 이상의 공청회를 거쳐 심의, 의결한다.
2.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학생총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公布)해야 한다.

제 10 장 탄핵소추권

제52조(발의) 집행부 1/4 또는 본 회 회원 1/5의 동의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이 경우에 피탄핵자의 성명과 직위, 탄핵의 사유, 증거, 탄핵소추 발의자들의 서명을 담은 명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결) 의결은 학생총회 의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4조(공포) 학생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도교수가 탄핵 의결을 즉시 공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3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칙 제49조에 따른다.

제2조(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선거 종료 후 자동적(自動的)으로 해산한다.

제3조(선거관리 위원의 입후보 등록) 선거관리 위원은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개의 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過半數)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거일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제6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 심사)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立候補者)에 대한 자격을 심사(審査)하고 선거일 5일전까지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투·개표 관리) 투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이 관리하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이 관리한다.

제8조(투·개표 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각 투표, 개표장에 참관인 1인씩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9조(무효소송) 1.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異意)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전(前) 항의 제소(提訴)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0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개표를 완료하고 바로 당선 공고를 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세칙 이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및 교외 인사나 각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의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교학부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수혜대상) 본교의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2014.3.1]

1. 학부 재학생
2. 대학원 및 연구과 재학생
3.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자격제한) [삭제 2012. 3. 1]

제6조(교내장학금의 종류와 금액) ① 교내 각종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입학장학금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일반전형과 성신특별전형 각각 상위 1명씩에게 지급한다.
2.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A급(9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각 학년별 상위 3명에게 각각 지급한다. 단, 대학수료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학년에 이수해야 할 학점 ⅔에 미달할 경우,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9. 1]
3. 하상장학금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B급(80점) 이상인 일반학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9. 1]
4. 가족장학금은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그 중에서 저학년 학생에게 지급한다. 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으로 정하며,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해당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의 2/3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B급(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5. 대건장학금은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대학원1~3학년)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3.1., 2014.3.1]
6. 양업장학금은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학부1~4학년)에게 지급한다.[신설 2012.3.1, 개정 2014.3.1.]
7. 근로장학금은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8. 외국어장학금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별표1-1] 참조).
9. 선교장학금은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교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교가 초청한 성직지망 외국인 신학생에게 지급한다.
10. 루도비꼬장학금은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신입생에게 지급한다.
11. 해외연수장학금은 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등 본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12. 신학원장학금은 교구 직권자의 추천을 받아 신학원에서 생활하며 양성을 받는 성직지망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14.3.1.]

② 교내장학금의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0.25]

제7조(교내 장학생의 선발) ① 교내 각종 장학생은 매학기 교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② 교내 장학생의 선발 시에는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충족할 목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8조(교외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교외 장학생은 국가기관, 교외인사나 외부장학재단에서 추천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추천 및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외 장학생의 선발이 본교에 위임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12.3.1.]

②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장학금의 취소) 장학금의 수혜자가 자퇴 및 제적 처리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수혜) ① 장학금의 중복수혜는 허용된다. 단, 성적우수와 하상, 성적우수와 가족, 가족과 하상 장학금 간의 중복수혜는 불허한다.

② 국가장학금 및 공공기관의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개정 2012.3.1, 2014.3.1]

제1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1]

제12조(대학원 장학금) ① 본교 출신자로서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성직자 및 수도자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② 본교의 재학생(신학생 및 수도자)은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사과정에 등록할 서울교구 출신 새사제에 한하여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대학원 교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신학부총장이 허락한 자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제13조(유학지원장학금) ① 본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유학생 선발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유학지원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장학금액은 유학준비비와 유학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학지역, 유학기간,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3. 18]

제14조(입학금의 감면) 학부 신입생 중 수도자와 평신도 학생에게는 입학금의 50%를 감면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2년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 1])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 규정([별표 1])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 규정(제6조, 제10조, [별표 1])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 1])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본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별표 1])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본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10조, [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본 개정 규정([별표 1])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개정 규정(제14조)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⑯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1], [별표1-1])은 201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명칭	수혜대상	지급액
우수입학	일반전형 수석 입학자	1학기 등록금의 2/3 (입학금 제외)
	성신특별전형 수석 입학자	1학기 등록금의 1/3 (입학금 제외)
성적우수	학년별 성적 1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2/3
	학년별 성적 2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1/2
	학년별 성적 3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1/3
하상	일반학생 신청자 중에서 선발된 자	〈학 부〉 A급(90점) 80만원 B급(80점) 60만원 〈대학원〉 A급(90점)100만원 B급(80점) 80만원
가족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 (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	등록금의 1/2 (입학금 제외)
대건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대건A: 대학원1, 대건B: 대학원2~3)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양업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학부1~4)	등록금의 20% (입학금 제외)
신학원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아 신학원에서 생활하며 양성을 받는 성직지망자	신학원비의 80%
근로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근로시간에 따름
외국어	별표 1-1 참조	20~100만원
선교	성직지망 외국인 신학생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루도비꼬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신입생	1년간 학기당 200만원
해외연수	어학연수	100만원
	해외문화탐방	팀당 300~400만원

[별표 1-1]

금액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TOEIC	TOEFL (IBT)	TOEFL (CBT)	TestDaF	DELF	CELI	CILS	DELE	JLPT	HSK
100만원	900이상	100이상	250이상	TDN 4	DELF B2	3	Due	B2	N2	4급
50만원	800이상	88이상	230이상	TDN 3	DELF B1	2	Uno	B1	N3	3급
20만원	750이상	80이상	213이상	ZD	DELF A2	1	A2	A2	N4	2급

[별표 2] 교외 장학금의 종류

- 학장특별장학금
- 김대건성인장학금
- 외국인신학생양성장학금
- 꾸르실료장학금
- 바오로사도선교장학금
- 국가장학금
- 보훈장학금

성심교정

1.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총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 건설과 가톨릭 교육이념에 입각한 사회 정의 구현과 진리 탐구를 위한 실천적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 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에 둔다.

제4조(운영) 본 회는 회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참여 아래 회칙에 의해서 운영한다.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율과 본 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지도) 본 회는 부총장 및 학생 자치활동에 관련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구성) 본 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인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로 구성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9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0조(권한)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1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2조(소집)

1. 학생총회는 전체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전학대회 개의 후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학생총회의 소집은 5일(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에 그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제14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로 칭함)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

아 활동한다.

제15조(구성)

1.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2.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3. 각 학부(과) 학생회장
4. 각 전공 학생회장
5. 각 학년 전공(과) 대표(단 일학년의 경우 반대표와 학부 대표 모두 대표자로 인정한다.)
6. 예·결산 심의를 받는 자치기구의 대표(단, 재적인원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7. 과(학부)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재적 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 할 수 있다.
8.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학대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자는 재적인원에 포함된다.
9. 전학대회 안건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있는 학우는 전학대회 개의 전까지 회원 15인 이상의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그 사항에 관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

제16조(의장)

1.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2. 본 회의 진행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3. 의장 유고시 총학생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학대회 의장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7조(소집)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 년 2회로 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제적대표자 1/3 이상, 또는 중앙 운영 위원회의 1/3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전학대회의 소집은 5일(주말, 공휴일은 제외)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기능 및 권한)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의 의결권이 있다.
2. 중앙 감사 위원회를 인준할 수 있다.
3.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다.
4.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이 있다.
5. 학생총회의 소집 교구권(한 학기 2회)이 있다.
6. 총학생회 집행부 전 부장의 해결 의결권이 있다.
7. 중앙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집행부, 단과대학생회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요구권이 있다.
8.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
9. 본 회 회비 및 회원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다.
10. 학교 당국에 학칙 개정 발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2.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집행부에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3. 전학대회 개의 후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9조(안건상정)

1. 총학생회장, 부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은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전까지 상정, 공고한다.

2. 재적대표자 1/5 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1. 재적 대표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 한다.
2. 총학생회장, 부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의 적용은 재적대표자 2/3 이상 출석과 참석 대표자 2/3 이상 찬성에 의해 적용된다.
3.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학대회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총학생회

제 1 절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부회장

제21조(지위)

1. 총학생회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임기)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차기 총학생회는 12월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1. 집행부의 각 부장 및 차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학생회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여 중앙위원회와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4. 결산을 편성하여 감사기구의 심의 및 감사를 받는다.
5. 학생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제 2 절 집행부

제24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5조(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차장을 둘 수 있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총학생회 사업계획 보고서와 예산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결산안 보고서를 감사기구에 제출한다.
4. 총학생회는 제반활동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7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8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각 단과대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겸임한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시에는 총학생회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 회비를 정하고 회칙 개정안의 발의건을 갖는다.
2. 본 회의 전체 예산과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예산을 작성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3. 결산안을 작성 감사기구에 제출한다.
4, 중앙운영위원회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31조(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와 임시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시기를 결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2.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중앙운영위원 1/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한다.

제32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전원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 (단,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위의 위임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2회 이상 미참석 시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확대운영위원회)

1.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학부(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는 특별 운영기구이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28조에 규정된 중앙운영위원과 각 학부(과) 학생회장,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3.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 또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4.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34조(지위)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들의 자치기구이다.

제35조(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을 구성하는 각 학부(과)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1.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 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37조(회칙)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 회칙에 준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

제 7 장 동아리 연합회

제38조(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전 동아리와 동아리인의 자치기구이다.

제39조(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전동아리의 동아리인으로 한다.

제40조(동아리연합회장)

1.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2.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 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41조(회칙)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의 이익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본 회 회칙에 준하는 범위에서 그 조직, 업무,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4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회비와 보조금으로 정한다.

제43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회계연도는 한 학기를 1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단 2학기 결산은 결산서를 만들어 2학기 기말고사 전에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2곳 이상에 비치한다.
3. 이월금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 당해연도 이월금을 재정으로 하는 차기년도 사업의 경우, 차기년도 학생회에서 집행하고, 전학대회에서 그 결산 안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단 해당년도 회계연도 이월기간 내에 학생회의 이월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단위의 임시대표자가 이를 집행하고, 전학대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4조(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승인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3. 본 회의 회비는 학교에서 징수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총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 관리한다.

제45조(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1. 예산은 집행부의 각 자치기구별로 사업계획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전학대회에서 결정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전학대회에서 거부하거나 의결한다.
3. (가예산) 운영상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때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전 학기 예산에 준해 총예산의 10%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단, 차기 전학 대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경우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학대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예산의 분배)

1.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는 학생회 회원수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동아리 연합회는 전체 예산의 18.5%를 분배한다.
2. 보궐선거를 통해 구성된 학생회는 예산의 5%를 삭감한다.
3. 구성되지 못한 학생회는 예산의 50%를 삭감한다.
4. 각 학생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에서 구성회원의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

제47조(예비비) 예비비는 총 예산의 2% 이내로 하고 그 지출은 전학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예산 집행) 예산 집행 시 각 기구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결산보고) 총학생회가 각 기구에서 보고 된 결산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감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 본 회비는 회계연도 말에 회계와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기구는 감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에는 불시에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9 장 선 거

제51조(선거시기) 총학생회장,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완료 1개월 전(10월-11월)에 실시한다.

제52조(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의 선거시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대마다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3조(선거권)

1. 총학생회장, 부회장의 선거권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2. 단과대 학생회장의 선거권은 단과대학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54조(피선거권)

1. 총학생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2. 기타 각 자치기구장 입후보 자격은 각 기구 세칙에 의한다.

제55조(선거방법)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하되, 회원과반수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

제56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총학생회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57조(선거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세칙에 의한다.

제 10 장 회칙개정

제58조(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학대회 재적 대표자 1/4 이상,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본 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해당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발의한다.

제59조(의결) 회칙개정의 발의 시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후에 전학대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 11 장 탄핵소추권

제60조(발의)

1. 전학대회 재적위원 30인 이상의 연서 또는 본 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 탄핵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전학대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에 피 탄핵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전학대회 의장이 피 탄핵자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하여 전학대회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61조(의결) 전학대회 의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의 탄핵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공포) 전학대회 의장은 탄핵 의결을 즉시 공포한다.(단, 전학대회 의장이 피 탄핵자인 경우 중앙위 중 대표를 선정해 탄핵의결을 공포한다.)

제 12 장 중앙감사위원회

제63조(지위) 중앙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학생경비를 재정으로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집행 및 결산의 감사를 관장하는 기구이다.

제64조(구성)

1. 전학대회 재적인원 중 단대별 1인과 전학대회 재적 외 인원 중 단대별 1인으로 각 단대별 2인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은 이들 중 선출한다.
2. 1학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활동하며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임할 수 없다.

제65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와 이하 특별자치기구, 각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등 학생회비 및 학생경비를 재정으로 하는 모든 단체의 예산 집행 및 결산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
2. 매 학기 1회의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필요시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에 자료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위 요구 시 해당 부서는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요청 3회 이상 불응 시 해당기구의 탄핵을 위한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소집 요구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전학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5. 감사결과에 따라 탄핵을 위한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소집 요구시 위와 동일)
6.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교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결)

1.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2. 수시 감사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다.
3. 전학대회 소집은 재적인원 2/3 이상 발의와 감사위 재적인원 전원참석, 참석인원 2/3 이상 동의로 요구한다.

제67조(기타)

1. 전학대회 1/2 이상 요구 시 감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위에 대한 감사권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갖는다.
3. 재감사 요구 시 감사위는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요구일로부터 1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재감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5. 11. 26)

제2조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9. 10. 11)

제3조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9. 4. 13)

제4조 제8장 제46조는 2001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성심교정 총학생회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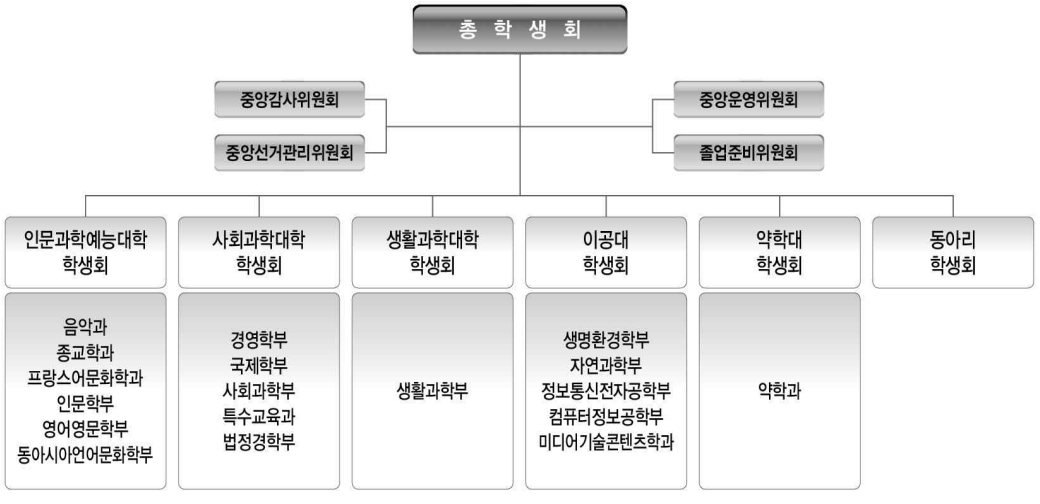

2. 학생과외활동

(1) 학생 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단체란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 요건) ① 모든 학생 단체의 조직 및 등록은 학생회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체의 설립 취지나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단체로서 신규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 교수를 거쳐 단체 등록 기간 중 학생지원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교내 학생 자치 단체 등록원
2. 기구 편성표
3. 활동 계획서
4. 지도 교수 승락서(지도 교수를 추천한 단체)
5. 서약서
6. 단체 가입 회원 명부
7. 회칙

② 기존 단체는 단체 등록 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지원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1. 단체 등록 신청서
2. 기구 편성표
3. 활동 계획서
4. 지도 교수 취임 승락서(지도 교수를 추천한 단체)
5. 서약서
6. 단체 가입 회원 명부
7. 전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서

제5조(승인) 학생단체는 등록 신청을 마친 후 학생활동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제6조(임원) 임원은 그 단체의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그 명단은 3일 이내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 ① 회원은 단체의 신규 및 재등록 시에만 모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에 한하며, 2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③ 1학년은 2학기부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단체의 재정은 그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실) ① 각 단체마다 하나의 단체실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단체실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1. 대학생 본분에의 일치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여부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공헌 여부
3. 행사 계획의 건전성과 활동의 모범성 여부
4. 과거 2년간의 활동실적 여부
5. 단체실의 효율적인 관리 여부

③ 단체의 성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지원 및 단체실의 배정을 취소하거나 단체실을 박탈할 수 있다.

1. 타 대학과의 연합 단체로서 본교 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없는 단체
2. 단일 학과 또는 전공이나 동문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3.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건전하지 아니한 단체
4. 과거 1년간의 활동 실적이 미진한 단체
5. 단체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단체
6. 활동 실적 보고 및 결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단체
7. 기타 본교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단체

제10조(집회 및 행사) ① 집회를 갖고자 하는 단체는 집회일 5일 전까지 행사·집회계획(신청서)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예술 및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행사 개요, 예산 관계, 대본 및 주제 내용의 요약, 지도 교수 의견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행사·집회계획(신청)서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의 연합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항의 첨부물 및 해당 대학 지도 교수와 학생취업지원처장 또는 해당기관 행사 책임자의 연서로 된 참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사 허가원을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행사가 수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도 교수의 확인을 득한 후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학생회비의 보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을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본조 제3항의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15일 전까지 총장 승인을 받아 허가한다. 다만, 중간 또는 기말 고사(전교생이 실시하는 시험 포함) 개시 10일 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는 각 단체의 집회 및 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단체는 행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 보고서를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비를 보조받은 행사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유인물) ① 단체는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티켓 등과 같은 유인물을 제작할 경우 그 초안과 계획(신청)서를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제작하여 배부하거나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

② 모든 게시물은 소정 용지로 한정하고 그 매수도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조정한다.

제12조(간행물) ① 단체는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간행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봉사 활동) ① 봉사 활동은 학과 또는 전공 및 단체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봉사 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봉사활동시 학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방학시작 30일 전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하고,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 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④ 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1개 단체의 단원수는 20명 이상, 봉사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봉사 단체는 대학과 총학생회(총학생회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봉사 활동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봉사 활동 결과 보고서, 결산서, 자체 평가서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 박탈)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 활동 운영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활동을 할 경우
2.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제15조(해체) ① 등록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단체는 단체 등록 마감일 이후 자동 해체로 간주한다.

②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

1. 해체 사유서
2.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해체 동의서
3. 지도 교수 의견서
4. 단체의 간판과 실 열쇠

제18조(시행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 활동 운영 자문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8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제4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15조, 제17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 간행물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 세칙은 학칙 제94조(학생간행물 및 홍보물) 및 학생 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그 편집에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이 참여하며, 본교 학생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간행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간행물의 분류) 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본교 전체 학생 대상 간행물
2.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 대상 간행물
3. 동아리 대상 간행물
4. 개인 대상 간행물

제4조(간행물 발간의 허가)

① 단체 또는 개인은 간행물을 발간할 때 다음의 서류를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발간 계획(신청)서
2. 인쇄 내역서
3. 원고
4. 예산서(개인이 발간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생 활동 운영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간행물의 발간을 허가한다.

제5조(간행물의 배포)

① 단체 또는 개인은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에 다음의 자료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부 승인원
2. 배부 계획서
3. 간행물 5부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간행물의 배포를 허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시행 세칙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시행 세칙은 198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시행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개정세칙(제4조,제5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분포〉

(3) 동아리의 목적과 내용

가. 공연예술분과

① 밴드 실험 : Soft Rock, 대중적인 재즈, R&B 등의 폭넓은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로서 교내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보다 전문적인 연주와 그 전수를 목적으로 한다.

② 가현회(클래식기타반) : 기타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감정을 선율로써 표현하고 또한 학우애와 인격을 함양하여 클래식 기타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 내용으로는 매년 신입생환영연주회와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동안 닦은 실력을 발표하여 회원 상호간의 격려와 학우들의 조언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기한다. 또한 기타의 올바른 주법과 이해를 위해 하계·동계 M.T.를 실시하며 전국 대학생 기타연합회 회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여 본 대학의 대외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③ C.D.Z(Catholic Univ. Dancing Zone) : '춤과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를 대중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함께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F.O.M(freedom of mouth) : freedom of mouth의 약자 그대로 입으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랩과 R&B 등 흑인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⑤ 민맥 : 1983년 3월에 창립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부를 수 있는 민요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여 민속적인 전통을 이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1년간의 주요행사로는 축제시 민요발표회와 6월에 민요시 모으기, 여름방학에 민요채집이 있으며 가을에 공연과 함께 채집된 민요를 발표한다.

⑥ SACRED(그룹사운드) : 음악의 전반적인 지식을 교환하고 합주연습과 동시에 공연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성취감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우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⑦ 극예술연구회 : 대학극을 이해하고 연마하여 대학 고유의 연극으로 발전시키며 공연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며 대학극의 순수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신입생 환영공연과 추계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매주 정기모임과 연극관람이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예술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연극이론을 공부하며 공연을 통해 모든 연극분야에 관한 기초수업과 연기실습을 하고 있다. 특히 1983년에는 중앙학도호국단 주최 전국대학 연극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을 하여 대내외로 학교의 이름을 알리는데 공헌을 하였다.

⑧ GIGA HITZ :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으로서 악기없이 사람의 Voice로만 Harmony를 추구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 아카펠라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⑨ 화랑 : 화랑은 일반동아리와는 달리, 학교를 홍보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톨릭대를 밝게 빛내는 응원단이 되기 위해 2005년 5월 13일 창설되었다. 학교 내외 다수의 행사를 통해 학교를 빛내고 있다. 대동제, 체육대회, 다맛제 등 교내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수많은 외부 공연과 대회 등에 참가하기도 한다. 2007년 3월에는 MBC ESPN CHEER UP KOREA 전국 치어 대회 본선에 진출, 4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주마다 정기적인 활동을 하여,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⑩ TONG : 가장 대중적인 악기인 통기타를 다루는 동아리로 주2회 정기모임을 통하여 기타를 배우고 다양한 공연을 시행하고 있는 동아리임.

나. 문화레저분과

① S.H.A.R.P(Sacred Heart Art Photo) : 취미동아리로 사진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1974년에 발족하여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진의 기능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의 습득과 영상예술을 통해 자신을 발견함으로 대학생활의 보람과 인격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기가 찍은 사진을 현상, 인화, 확대까지 직접 할 수 있어 한 장의 사진을 스스로 완성시킬 수 있다. 본 동아리의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5월 축제에 교내전시회와 9월에 교외 정기전시회를 개최하며 11월에는 학술제 세미나를 개개최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4박 5일의 원정촬영을 갖는다. 이외에는 매주 야외촬영과 세미나를 하며 회원상호간의 촬영방법과 기술습득에 대하여 의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타 대학 사진반들이 함께 모인 동우회에서는 야외촬영과 전시회를 갖는다.

② Ani.C.A.T은 가대 유일 만화동아리로서 Animation&Cartoon의 약자이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Ani.C.A.T은 상영회, 전시회, 코스프레, 회지발간 등 만화와 애니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폭넓게 해 나가고 있는 동아리이다.

③ 모꼬지 : 가톨릭대학교 유일 여행 동아리이며, 주로 학기 중에는 친목을 다지고 방학 중에는 동아리 구성원 끼리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기도 한다. 여행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의 함양을 기원하며 회원간의 상호 친목을 통해서 건전하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④ 산악회 : 1964년에 등록된 역사 깊은 동아리로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재학생 중 산악인이 되기 위하여 등반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회원의 심신을 단련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전한 산악운동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산행은 휴일과 연휴를 이용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부활절휴가와 방학, 연휴를 이용하여 춘계, 하계, 추계 등 장기등반을 하며 1달에 2번씩 일일등반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⑤ 와락 : 가톨릭대학교 유일 와인동아리로 WARAK은 와인의 “와”와 즐긴다는 의미의 “樂”으로 이루어진 와인동아리입니다.

⑥ CINEPHILE : 영화관람·토론·세미나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영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을 유도하며

나아가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생활 공간 확보에 취지를 둔다.

⑦ 더게임 : 오프라인 및 온라인 게임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단비 같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동아리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봉사분과

① 로타랙트 :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지도력의 양성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육성을 꾀하는 로타리 클럽과 연관된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전공분야의 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성심안에서 지역사회 봉사와 책임감을 함양시키고자 1987년 3월 25일에 설립된 동아리이다. 봉사를 근본목적으로 하여 크게는 국제이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활동하는 모임이다.

② 사랑살기 : 1975년에 창립되어 순수한 지역봉사를 통해 선후배 회원들 간의 우애와 친목을 도모하여 대학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한 모임이다. 주요행사로는 매주 정기적으로 고아원인 '새소망소년의 집'을 방문하여 원아들에게 학습지도, 생활지도와 놀이를 하며 사랑을 나눠준다.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아방지를 위해 '어린이날 이름표 달아주기'를 실시하며 7월에는 농촌봉사활동과 매학기 M.T.를 실시한다.
매월 1회 월보와 매년 1학기 회지『한마음』을 발행하고 있으며 매주 정기모임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회원들 간에 대화를 통해 지식과 인격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③ 농락 : 저희 농사짓는 즐거움 농락은 가대유일중앙환경동아리로서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학교 뒷산에 위치한 텃밭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컵샐러드나 축제기간에 고기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내의 카페의 컵홀더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이면지를 수거하여 노트를 만드는 등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 어린이센터에서 정기적인 교육봉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라. 체육분과

① 코트랑 :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모임에서 출발하여 테니스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며 회원들의 우의를 두텁게 하고 건전한 운동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행사로는 춘계테니스대회와 추계테니스대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② 검도부 : 예를 중시하는 운동으로 검도의 목적은 심신단련, 정신수양, 기술연마, 화랑정신 양양이다. 매일 아침 연습을 통하여 한학기에 한번씩 연무시범을 하고 있다.

③ 태권도부 : 본교 학우들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학교분위기를 쇄신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심신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둔다.

④ REVERSE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최초의 농구동아리로서 학우들의 체력증진과 운동을 통한 정신적 건강과 각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체육시설 복지에 힘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⑤ kick - off : 본교생들의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을 주목적으로 하며, 그 외 축구경기를 통한 학우들 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감 형성을 꾀하기 위해 존립한다. kick-off가 주선하는 운동경기를 통해 학우들 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각종 축구대회 참가로 학교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성격으로 존립하는 동아리가 바로 킥오프(kick-off)이다.

⑥ 가로채기 : 가로채기는 1996년도 학교에서 농구하는 농구인들이 농구라는 단어 하나에 끌려 합심하여

서 세워진 모임이다. 2007년도 총장배 5:5대회와 2006년도 교내 3:3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바 있다. 2학기에 5:5대회를 개최하며 주마다 정기적인 활동을 하여,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⑦ 텀블러즈 : 텀블러즈는 2009년 처음 창단하여, 2010년 정식동아리로 승인 받았으며, 공중제비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가톨릭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공중제비하는'이라는 의미가 체육분과 동아리로서의 역동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점을 통해 텀블러즈라는 동아리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텀블러즈라는 야구동아리로서 야구를 배우면서 야구를 하고, 보고, 즐기는 동아리입니다.

마. 학술분과

① 호우회 : 1978년 6월에 창립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모임으로 친목, 봉사, 학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활동내용으로는 학술세미나, 독서토론회, 축제기간 중 상품판매, 국군장병 위문카드, 하계봉사, 국군묘지헌화, 회지발간 등이 있다.

② A.L.A(AFKN Listening Association) : 명칭에서 말하고 있듯이 AFKN 방송청취를 통하여 영어 청취력과 아울러 회화력 향상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1979년에 창립된 본 회는 전국대학 A.L.A. 연합회에 가입되어 교내활동은 물론 대외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대학생 '영어청취력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평소에 연마한 실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특히 A.L.A.는 외국인 지도교수를 모시고 일상생활의 대화시간을 자주 가지며 지난해부터 우리 대학의 전통행사인 'English Speech Contest'를 본 회에서 주관하며 학년 초에 신입생을 위한 원어연극공연을 통하여 영어의 생활화를 꾀하고 있다. 학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회원 간의 친목과 선후배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간담회, M.T., L.T. 등을 유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③ K.U.S.A(Korea Unesco Student Association)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산하단체로 1968년에 창립되어 새물결 운동으로 캠퍼스 내의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학술적·봉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축제시 학술발표 및 판매활동을 하여 독서토론회와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실천 활동으로 봉사활동이 있다.

④ MIDAS : 2003년에 창설되어 벤처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벤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골든크로스(GOLEN CROSS) : 99년 10월에 창립하여 주식에 전반적인 이해와 증권투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학습 및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⑥ 문학연구회 : 학술연구 성격을 띤 동아리로서 전반적인 문학연구를 통해 국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회원 간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행사로는 축제기간 중 서적전시 및 서적판매로 학내 학풍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여행과 답사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문학답사를 실시하며 2학기 학술제에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경험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는 학년별 주 1회 강독과 연 2회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문연』이라는 회지에 실어 한 해의 공부를 마무리 짓는다.

⑦ 37.5 : 학생들이 무대에서 자신감을 찾고, 무대울렁증, 발표공포증, 자신감 부족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활동 목적이다.

⑧ SHIELD :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동아리로 범죄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

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 인해 대책을 논의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우리 주위의 피해자들이 피해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따듯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아리입니다.

⑨ COMA : COMA는 Control Master의 약자로 IT동아리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획 및 디자인 팀으로 이루어져 워하는 공부와 IT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바. 종교분과

① J.O.Y :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의 약자로서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으로 둘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죠이선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캠퍼스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표를 가진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로서, 매주 목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7단계 제자훈련을 통한 조직적인 성경공부, 방학 중 선교사들과 함께 영어성경과 회화를 공부하는 Summer English Class, 캠퍼스 및 민족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능력있는 영적지도자 준비를 위한 Campus Leader Training,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내용의 수양회가 있으며 이외에는 각종 M.T, '친구초청 전도집회', '체육대회', '등산', '소풍', 선후배와의 만남의 장인 'Home coming Day'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② I.V.F(Korea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 지성사회의 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전도(evangelism), 제자도(discipleship), 선교(missions)의 정신을 갖고 있다.
1977년에 발족된 본 I.V.F는 전국 대학 여름수련회와 Bible&Life Conference, 신년 특강이 있으며 행사로는 매주 정기모임, D.P.M (아침기도회), Cell의 모임 및 1년에 1~2회에 걸쳐서 캠퍼스 전도를 목적으로 One-to-One-day를 가지며 매학기 회지『Guide』를 발간하고 있다. 축제시 서적전시, 그 외에 타 Chapter와 연합모임이나 방문의 기회를 가지며 매학기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 11,28).

③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R.브라이트 박사에 의해 창설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김준곤 박사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현재 서울 정동에 본부를 두고 있다. C.C.C.는 전도, 육성, 파송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으로는 대학별 순모임, 정기모임, 정기전도 모임 등이 있다. 또한 매년 초에 새해를 주님께 드리며 1년 동안의 일을 계획하고 맡기는 원단금식을 하며 심천천막여름 수련회는 전국 대학생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감의 환희로 매년 여름마다 충북 영도군 심천에서 행하여지는 C.C.C.의 큰 행사 중의 하나이다.

④ 소피이바라(가톨릭학생회) : 성심학원의 창립자인 성녀 마들렌 소피이바라 수녀의 이름을 따라 소비이바라회라 하며 Pax Romana운동에 따라 조직된 서울대교구 대학생연합회에 소속된 단체이다. Pax Romana의 목적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공동체의식 개발과 성숙한 신앙인, 사회봉사인의 능력함양을 바탕으로 한 인간구원에 있다. 본 회의 조직으로는 전례부, 학술부, 봉사부, 홍보부가 있다. 전례부는 교내외 미사와 전례행사를 부관하고 교리교육과 전례교육을 통해 신앙성숙을 도모한다. 학술부는 회지를 방행하고 성서모임 등 신학적 탐구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의 이론적 성숙을 꾀한다. 봉사부는 정기적 봉사활동, 피정, M.T를 담당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생활화하고 회원간의 친구와 일치를 꾀한다. 홍보부는 교내외의 홍보를 통하여 연합회와 타교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3. 학생상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칙 제69조(포상), 제70조(징계)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생
2. 모범이 될만한 선행 학생
3.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4. 학생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5.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

제4조(포상의 발의)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제3조의 포상의 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정 교무위원회의 또는 관련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및 주임교수 의견서 각1부

제5조(포상의 결정) 포상은 교정교무위원회의 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6조(포상의 기록) 학사지원팀 및 학생지원팀에서는 포상 내용을 수상대장 및 학적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추천서, 기타 증명서 발급시 이를 명기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2. 학생 지도상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학생
4.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으로 학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5. 학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시킨 학생
6.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가한 학생
8.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8조(징계의 발의)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제7조의 징계처분 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징계위원회 또는 관련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
3.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 의견서 1부

제9조(학생징계위원회) 학생 및 학생단체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징계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학생활동자문위원이 학생징계위원이 된다.
2. 회의소집 : 학생지원팀에 징계요청 서류가 접수된 후, 학생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심의, 의결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재심 :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이 청구되면 학생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근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언행이 불량한 학생
2.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3. 고사 중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허가없이 공고물 및 게시물을 비지정된 곳에 부착하거나 게시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5. 성희롱, 성추행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한 학생
6.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2조(유기 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교내질서를 문란케한 학생
2.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5. 허가없이 공고물이나 유인물을 배부한 학생
6. 두번 이상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
7.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학생
8.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3조(무기 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폭력을 행사한 학생
2. 고의로 교내질서를 심히 문란케한 학생
3. 고사 중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학생
5. 금품 및 물품을 절취 또는 갈취한 학생
6. 학교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파손시킨 학생
7.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학생
8.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을 망각하고 극히 불미한 행동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학생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형이 확정된 학생
3. 재학 중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
4.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5.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학생

6.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5조(징계의 결정)

1. 징계처분의 결정은 교정교무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2.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이나 참고 발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특별 지도)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권리 정지)

1.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가가 금지된다.

2.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3.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본교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징계의 해제)

1. 근신 및 유기정학의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해제된다.

2. 무기정학의 경우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해제한다.

제19조(징계의 감면)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징계대상 학생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통보)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포상과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교무처장,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정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제4조, 제7조4호,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규정 제5조의 포상의 결정은 해당 교정 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장학금

(1) 장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성신교정, 성의교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2.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학부(전공)·학과별 배정
3.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심사 및 확정, 단 교정 부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장학금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

1. 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부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선정 위촉하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

1.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2.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시행 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례 조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3장에 의거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2조(적용 범위) 본교 성심교정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 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과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9.1, 2013.11.21〉

제4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 및 국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6.1.〉

②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1, 별표 1-1,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3.11.21., 2017.2.14.〉

③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3와 같으며, 지급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교학부총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11.21〉

④ 교내·외 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학부생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또는 연구보조비는 장학금으로 간주한다.

⑤ 국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12.6.1, 개정 2013.11.21〉

제5조(수혜 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을 학비감면으로 수혜 받은 자가 당해 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이월을 할 수 있다.〈신설 2012.4.17.〉

제6조(지급 대상) 본교 성심교정의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정규학기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4.17., 2017.2.14.〉

1. 신입생 중 입시요강에 의한 장학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가정 사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3.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4. 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5.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6. 본교 성심교정 교직원의 직계 자녀
7.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2017.2.14.〉
8. 성직자, 수도자로서 소속 원장이나 본당 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9.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신청 방법) 장학금의 신청은 매학기말 학생취업지원처에서 공고한 기일 내에 온라인신청을 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1.〉

[전문개정 2009.9.1]

제8조(신청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후 한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중 복학자에게는 최우수·우수·성적향상·희망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 및

가정사정곤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지원장학금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4.17.〉

1. 복학 및 재입학자
2. 학칙 위반자
3. 근로 평가가 'F'인 자

제9조(추천 기준) 각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개정 2006.3.1., 2013.11.21〉

1. 교내 장학금 수혜 자격에 부합되는 자(별표 2 참조)
2. 가계 곤란자

제10조(장학생의 확정) 학생취업지원처는 각 학부(전공)·학과로부터 선발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및 기타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장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2.4.17, 2013.11.21〉

제11조(지급 시기) 교내 장학금은 매학기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급 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확정된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3.1〉

제13조(중복 수혜) 장학금은 정규학기동안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다.

1. 성적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
2. 장학위원회에서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장학금

[전문개정 2009.9.1.]

제13조의 2(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범위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신설 2012.4.17.〉

1. 신입생 장학제도에 근거하여 수혜받는 특전사항
2. 국제교류처 주관 국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수혜하는 국제화 장학금
3. 각종 장학기금 장학금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학금

제14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

1. 등록이월하지 않은 휴학자
2. 제적 및 자퇴자
3. 근로평가가 불량한 자
4.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2017.2.14.〉

제15조 삭제 〈2009.9.1〉

제16조(교내장학생 배정) 교내장학생은 각 학부(전공)·학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장학금 기부) ① 성적우수장학생(최우수, 우수)은 수혜 받은 장학금을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1.〉

② 전항의 기부된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9.1.〉

③ 장학금을 기부한 성적우수장학생에게는 학적부 등재, 총장감사패 수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학부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7.〉

④ 삭제 〈2013.11.21〉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교학부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

다.〈개정 2012.4.17.〉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⑥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 규정(제17조)은 200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규정(제7조,제9조,제12조,제15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별표 1, 별표 1-1, 별표 2, 별표 4)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인턴십 및 근로장학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1)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별표 1, 별표 1-2, 별표 2)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학생부우수자'는 2014년 10월 22일, '가톨릭지도자추천'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별표 2, 별표 3)은 201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6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1-2)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14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1-1, 별표 2)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약학대학 신입생 장학금'과 [별표 1-1]의 '편입학외국인장학금'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별표 2]의 '학업우수장학 및 한국어향상장학, 도우미장학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입생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명칭	선발기준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최소 이수 요건	특전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본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에 합격한 자로 입학전형 성적이 전체모집단위 상위 8위 이내인 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1 학기		
	논술	본 대학의 논술전형 모집에 합격한 자로 입학전형 성적이 전체모집단위 상위 5위 이내인 자				
	잠재능력 우수자	본 대학의 잠재능력우수자전형 모집에 합격한 자로 입학전형 성적이 전체모집단위 상위 5위 이내인 자				
	가톨릭 지도자 추천	본 대학의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모집에 합격한 자로 입학전형 성적이 전체모집단위 상위 2위 이내인 자	수업료의 35%			
정시모집	진리 (최우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입학 후 17 학점, 3.5 이상	1. 4년간 면학장학금 매년 500만원 지급 2. 기숙사 선발시 우선권 부여 3. 해외탐방 기회 부여1,2학년 방학 중 실시) 4.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5. 장기(1년간) 해외연수경비(수업료+기숙사비+항공료) 지급 6. 본 대학원 진학 시 2년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
	사랑 (우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				1. 해외탐방 기회 부여(1,2학년 방학 중 실시) 2.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3. 방학중 단기(1회) 해외연수경비(연수비+기숙사비+항공료) 지급 4. 본 대학원 진학 시 2년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

구분	장학금 명칭	선발기준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최소 이수 요건	특전
	봉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		4 학기		1. 해외탐방 기회 부여 1,2학년 방학 중 실시)
	비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각각 2등급 이내 ※ 단, 최초합격자 기준 모집단위별 상위 15% 이내(소수점 절상)만 지급		2 학기		1. 해외탐방 기회 부여(1,2학년 방학 중 실시)
약학대학	최우수 장학금 (약학 우수A)	입시성적 1등 〈1명〉 (최초 합격생 대상)	수업료 전액	4 학기	입학 후 17 학점, 3.5 이상	
	우수 장학금 (약학 우수B)	입시성적 2~3등 〈2명〉 (최초 합격생 대상)	수업료 50%	2 학기		
기타	성심추천	소속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수업료의 35%	8 학기	입학후 15 학점 2.5 이상	

※ 정시모집 진리, 사랑, 봉사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추가 합격자도 포함함. 단, 비전장학생 선발대상은 최초 합격자에 한함.

※ 교차지원자 제외사항 : 자연과학 / 공학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선택자는 장학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단, 생활과학부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에 한하여 사회탐구 선택자도 장학 대상에 포함함.

※ 장학금 수혜 기준을 연속 2회 또는 단속 3회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영구히 제외(2014 입학생부터 적용, 단 약학과는 2016 입학생부터 적용)

[별표 1-1] 외국인 신입생 장학제도

장학명	장학내용	자격기준	지급요건
순수외국인 영어 우수장학	4년 전액 (입학금제외)	TOEFL iBT 100점 이상 취득자 또는 TOEFL iBT 100점에 상응하는 영어 구사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3.5이상 취득
순수외국인	4년 전액	TOPIK 6급 취득자 또는 TOPIK 6급에 상응하	

장학명	장학내용	자격기준	지급요건
한국어 우수장학	(입학금제외)	는 한국어 구사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순수외국인 장학A	1년 전액 (입학금제외)	TOPIK 5급 취득자 또는TOPIK 5급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 1학기 - 자격기준에 따라 학비 감면 • 2학기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 취득
순수외국인 장학B	1년 반액 (입학금감면)	- 본교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취득자	
순수외국인 장학C	1년 반액 (입학금제외)	- TOPIK 3급 취득자 - TOPIK 3급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자 - 입학성적우수자	
Global Scholarship	4년 전액 (입학금포함) 생활보조금 (25만원/월) 기숙사 제공 (4인 1실)	- 해당국 가톨릭교회 추천 (가톨릭지도자 및 가톨릭고교장 추천 포함) - 당해국 주재 한국공관 또는 한국 주재 본국공관의 추천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 취득
편입학외국인 장학	최초 학기 반액 (입학금제외)	- S-TOPIC 4급 취득자 - S-TOPIC 4급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자	

※ 외국 국적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 후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 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학 전 기준 어학성적 미 취득 시, 첫 학기에는 신청과목이 제한되며 차기학기(2학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별표 1-2] 〈신설 2015.11.10., 삭제 2016.9.28.〉

[별표 2] 재학생 장학제도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신청기간
진리	성적우수	최우수	각 전공(학과)의 학년별 수석자	수업료 전액	6월, 12월 내부선발
		우수	각 전공(학과)의 성적우수자	수업료의 35%	
		성적향상	향상 직전학기 성적 1.75 이상인 자 중 1.5 이상 성적 향상자	60만원	
		학업우수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의 신청자 중 선발	50~300만원 (차등지급)	국제 교류팀 선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향상	입학 후 6개월 이내 S-TOPIC 4급 이상 증서 제출자	30만원	
			입학 후 12개월 이내 S-TOPIC 4급 이상 증서 제출자	20만원	
사랑	가계곤란자	THE Dream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 중 가계곤란자	수업료 범위(입학금 제외)내에서 지원	6월, 12월
		인턴십	행정부서 및 교내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자	일정액 ※근무시간(120시간)에 따른 매년 변동 시급 적용함	학기초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신청기간
		근로		행정부서 및 교내기관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자	일정액 ※근무시간(근로A 200시간, 근로B 120시간, 근로C 90시간)에 따른 매년 변동 시급 적용함	학기초
		희망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 상위자	수업료 범위(입학금 제외)내에서 지원	2월, 8월
		가족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 우선 선발(저학년 소속 교정에서 지급하며, 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	수업료의 50%	학기초
		기부		가계가 곤란한 본교 재학생	기부된 금액	학기초
봉사	성취	고시	A	본교에서 인정하는 시험의 최종합격자 (사법, 행정, 외무, 입법, 법원행정, 지방,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수업료 전액 (졸업시까지)	학기말
			B	본교에서 인정하는 시험의 1차합격자 (사법, 행정, 외무, 입법, 법원행정, 지방,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수업료 전액 (1년간)	
			C	본교에서 인정하는 시험의 최종합격자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수업료 전액 (1년간)	
		고시반		고시반 구성원으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65만원	
		임용고시반		임용고시반의 구성원으로 지도교수에 의해 추천 받은 자	65만원	
		학술연구		전공(학과)별 연구발표를 통해 전공주임이 추천한 자(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해당 장학금 연구 참가자 수로 나누어 지급)	별도공고
		국제화		교환학생, 해외인턴쉽 및 각종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해당 전공, 학과, 부서의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해당 금액	
		ELP/EEP		ELP/EEP과정신청자 중 성적우수자	일정액	별도공고
	가톨릭 가족	교직원 자녀		본교 교직원 자녀(명예퇴직자 자녀 포함)	수업료 전액 (명예퇴직자 자녀는 수업료의 50%)	학기초
		성심추천		성직자 또는 수도회장상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수업료의 35%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신청기간
	참여	단체장		교내 자치기구 임원	A(수업료 전액), B(180만원), C(100만원), D(65만원), E(50만원)	별도공고
		도우미		가홍이, OBF, 웹진, CUK 프렌즈에서 활동하는 학생	팀장(80만원), 팀원(60만원)	
		사회봉사		봉사실적 90시간 이상 우수자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자	55만원	학기말
		까리따스봉사		까리따스 학생 봉사단원 중 추천 받은 자	60만원	
		멘토링	A	북한새터민, 만학도, 편입생, 외국인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와 연계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재학생	최대 100만원	학기초
			C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내생활을 위해 봉사한 자	60만원	
특별		ROTC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50만원	내부 선발
		총장		총장이 추천한 자	일정액	
		군장학생		직업군인인 본교 재학생	수업료의 50%	
		특별지원		교무위원회,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일정액	
		장애학생		장애 1~4급 이상의 장애학생으로, 장학금 신청자 중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수업료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6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입은 본교 재학생	일정액	수시
		북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 해당기관의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자	수업료 전액	학기 초
		보훈		보훈대상자	수업료 전액	학기 초

※ 장학금 수혜기준

1) 진리장학금 : 직전 학기 이수학점 17학점(성적향상은 15학점) 이상, 직전 학기 성적이 각각 4.0(최우수), 3.5(우수), 1.75(성적향상) 이상인 자
2) 사랑장학금, 봉사장학금 : 직전 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THE Dream은 12학점, 자연재해, 보훈장학금 제외), 직전 학기 성적이 2.5(THE Dream은 80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 보훈장학금은 70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 자연재해 제외) 이상인 자 〈개정 2012.6.1〉
3) 성적장학금 동점자 처리기준 : 이수학점수 많은 자 → P/F 과목 학점수 적은 자 → 제1전공 이수학점수 많은 자 → 이수학기 적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P/F과목 신청자 학점 처리기준 : 학기말 총 이수학점 중 P/F 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하며, 성적과 학점 동일 시 P/F 과목 학점수가 적은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 〈개정 2018.3.1.〉

[별표 3] 교외 장학금 종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1	KSD나눔재단 장학생	성적우수	105	희망드림	가계곤란
2	가송재단	성적우수	106	강릉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	경동송천	성적우수	107	거창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4	구원	성적우수	108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금	단체소속
5	농협우수장학생	성적우수	109	관우장학회	단체소속
6	대학꿈지기	성적우수	110	데이타게이트코리아	단체소속
7	미래인재육성재단	성적우수	111	동래구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	단체소속
8	본솔김종한	성적우수	112	동방	단체소속
9	부천장학재단	성적우수	113	동익개발(주)	단체소속
10	산학협동재단	성적우수	114	부여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단체소속
11	삼송장학회	성적우수	115	부여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학금	단체소속
12	송천재단	성적우수	116	부천시	단체소속
13	승국장학금	성적우수	117	삼공장학금	단체소속
14	신라문화장학재단	성적우수	118	서부농협장학회	단체소속
15	신양문화재단	성적우수	119	세종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	단체소속
16	안동시 장학금	성적우수	120	영도육영회	단체소속
17	안산꿈키움장학금	성적우수	121	우리관리주식회사	단체소속
18	영풍문화재단	성적우수	122	울산온산소방서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19	옹진군덕적면주민	성적우수	123	원진신약	단체소속
20	우수학생육성 교환학생	성적우수	124	인제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1	음성장학회	성적우수	125	인천강화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2	이공계 국가장학생(수시우수유형)	성적우수	126	인천계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3	이공계 국가장학생(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성적우수	127	인천공단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4	이공계 재학중 우수자	성적우수	128	인천광역시남구청 통장자녀	단체소속
25	이공계국가장학생(성적우수)	성적우수	129	인천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6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대학교)	성적우수	130	정선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7	인문계 재학중 우수자	성적우수	131	진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8	인문사회계 국가장학생(수시우수유형/2년지원)	성적우수	132	철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29	인문사회계 국가장학생(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성적우수	133	춘천소방서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0	일주학술문화재단	성적우수	134	충남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1	정산장학재단	성적우수	135	충남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2	정수장학회	성적우수	136	충남 연기소방서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3	정헌재단	성적우수	137	하동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4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성적우수	138	하정학술장학회	단체소속
35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장학금	성적우수	139	한국광해관리공단	단체소속
36	케이티 창의혁신장학	성적우수	140	한국노총장학	단체소속
37	케이티문화재단	성적우수	141	경기도민회	지역출신
38	키움증권 금융장학생	성적우수	142	과천시애향장학회	지역출신
39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	성적우수	143	광명시인재육성장학	지역출신
40	한국지도장육성장학재단	성적우수	144	광주시민장학회	지역출신
41	교육기부사업	학생조교/인턴십	145	군포사랑장학회	지역출신
42	국가근로(도우미)	학생조교/인턴십	146	김제사랑장학재단	지역출신
43	국가근로(방학중)	학생조교/인턴십	147	김포시민장학회	지역출신
44	국가근로A	학생조교/인턴십	148	보령시 이통장	지역출신
45	국가근로B	학생조교/인턴십	149	삼척향토장학재단	지역출신
46	국가근로C	학생조교/인턴십	150	서울제주도민회장학금	지역출신
47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학생조교/인턴십	151	성남시장학회	지역출신
48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학생조교/인턴십	152	성동구 장학	지역출신
49	kdb vision	가계곤란	153	수안군장학회	지역출신
50	강남구청	가계곤란	15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지역출신
51	강원도탄광지역저소득층	가계곤란	155	옹진군장학재단	지역출신
52	계양구사회복지	가계곤란	156	완주군애향장학생	지역출신
53	국가장학금 유형 I	가계곤란	157	은평구민장학재단	지역출신
54	국가장학금 유형 I (다자녀)	가계곤란	158	은현장학재단	지역출신
55	국가장학금 유형 I (추가승인분)	가계곤란	159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지역출신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56	국가장학금 유형Ⅱ	가계곤란	160	제주삼다수재단	지역출신
57	기슨	가계곤란	161	제주시노형동	지역출신
58	두산연강재단	가계곤란	162	제주장학재단	지역출신
59	러시앤캐시배정장학회	가계곤란	16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역출신
60	롯데장학재단 장학	가계곤란	164	종로구장학회	지역출신
61	마포꿈나눔장학금	가계곤란	165	태백시	지역출신
62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가계곤란	166	태백시민향토장학금	지역출신
63	미래드림	가계곤란	167	평택시 애향장학회	지역출신
64	미래에셋 해외교환	가계곤란	168	포항시장학회	지역출신
65	미래우학	가계곤란	169	나눔고리기금	장애인
66	바오로	가계곤란	170	디딤돌	장애인
67	복사골청운	가계곤란	17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68	사랑드림	가계곤란	172	GKS 우수교환학생	기타
69	사랑드림(ETS TOEFL)	가계곤란	173	GKS 우수자비유학생	기타
70	사랑드림(KGC인삼공사)	가계곤란	174	GKS 한일대학교류	기타
71	사랑드림(대한LPG협회)	가계곤란	175	IBK기업은행(역곡지점) 장학생	기타
72	사랑드림(범한판토스)	가계곤란	176	KRX DREAM 장학	기타
73	사랑드림(삼성)	가계곤란	177	tvN 대학토론배틀4 장학금	기타
74	사랑드림(한국화웨이)	가계곤란	178	경인제일교회 장학	기타
75	사리원시 봉산군 장학회	가계곤란	179	공군조종	기타
76	상록장학금	가계곤란	180	김미경의 파랑새 장학금	기타
77	서울희망장학금	가계곤란	181	노스페이스 드림	기타
78	성심동문회	가계곤란	182	농어촌희망재단	기타
79	성심수녀회	가계곤란	183	리즈 디엔에이	기타
80	성음	가계곤란	184	메가스터디 팀플 장학금	기타
81	실직자녀장학금	가계곤란	185	백운재단 장학금	기타
82	아산	가계곤란	186	보훈	기타
83	아프로에프지장학회	가계곤란	187	석성장학회	기타
84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가계곤란	188	수도권특성화장학	기타
85	안양시 저소득복지기금	가계곤란	189	수원사랑장학재단	기타
86	요안나 장학회	가계곤란	190	안산시 다자녀가정 학자금	기타
87	요안나(2015-2학기 고지서감면)	가계곤란	191	안스코퍼레이션 장학회	기타
88	우덕재단	가계곤란	192	안젤드림	기타
89	우수드림	가계곤란	193	양주시희망장학재단	기타
90	우수드림(학업장려비)	가계곤란	194	연강재단	기타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91	우수인력양성대학	가계곤란	195	오성장학재단	기타
92	이공계저소득층자녀장학금(과학)	가계곤란	196	용인시시민	기타
93	인송문화재단	가계곤란	197	원아시아클럽서울 장학	기타
94	인천광역시 월디장학회	가계곤란	198	일산장학회	기타
95	전북애향장학재단	가계곤란	199	재암문화재단	기타
96	주심	가계곤란	200	지정기부	기타
97	지일장학금	가계곤란	201	청합장학회	기타
98	티오에프장학	가계곤란	202	테크플러스장학	기타
99	푸른등대 기부장학금(대한LPG협회)	가계곤란	203	평화장학금	기타
100	푸른등대 기부장학금(한국화웨이)	가계곤란	204	하이트진로 장학	기타
101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가계곤란	20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기타
102	하남시민	가계곤란	206	해군장학생	기타
103	하영호 장학재단	가계곤란	207	해성문화재단	기타
104	한국방정환재단 복지장학	가계곤란	208	홀트아동복지회	기타

[별표 4]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신설 2013.11.21.〉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선발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분위 0~8분위 해당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책정	한국장학재단 선발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II유형	소득분위 0~8분위 해당 재학생	본교 별도 책정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별도 선발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5. 학생병사안내

1) 재학생 입영연기

가. 내용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나. 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 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다.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4 학기제	5,6 학기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8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6세

라.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마.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바. 징병검사, 입영원 출원과 같은 기타 병무관련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참조.

2) 학생군사교육단

제207학생군사교육단은 2005년 11월 3일자로 국방부령에 의거 창설되었으며, 2007년 3월 9일 창설식을 실시하여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학군사관후보생 규정

가. 지원자격

1) 정시선발 : 본교 2학년 남·여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 및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2) 사전선발(예비 ROTC 선발) : 본교 1학년 남자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 및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3)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3학년 복학이 가능한 자
4) 군인사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5) 각 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하지 아니한 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는 제외)
6) 대학성적이 평점 C학점(2.0) 이상자로 신청학점의 80% 이상 취득자
   (성적부진으로 1회 이상 유급자는 선발 제외)

나. 선발방법

1) 선발 배점 기준

구 분	계	필기고사	대학성적	수능·내신 성적(선택)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인성 /신원조회
2학년 남자(정시선발)	1,000	200	100	200	100	400	합·불
2학년 여자(정시선발)	1,000	200	100	200	100	400	합·불
1학년 남자(사전선발)	900	200	-	200	100	400	합·불

※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 합격 / 불합격제

2) 지원서 접수방법 : 3월~4월 사이 인터넷 지원접수 후 학군단 행정실로 서류 제출
3) 구비서류 : 지원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1부, 대학 성적증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1부,
컬러사진(반명함판 3.5×4.5㎝, 탈모상반신) 3매, 신원진술서 3부, 가산점 증빙서류
4) 필기시험 : 지적능력검사, 국사, 직무성격/상황판단검사, 인성검사
5) 체력검정 : 1.5㎞ 달리기(합/불 및 점수제), 윗몸일으키기(2분/점수제), 팔굽혀펴기(2분/점수제)
6) 면접 : 심사기준에 의거 실시
7) 신체검사 : 군병원(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실시
8) 1차 선발 : 필기고사, 대학성적 및 인성검사 합격자(사전선발은 대학성적 미반영)
9) 2차 선발 : 체력검정, 면접평가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종합성적 순
10) 신원조회 : 2차 합격자에 한해서 의뢰
11) 최종선발 : 신원조회 합격자 중 종합성적 순

다. 학군사관 후보생의 특전

1) 후보생 기간 중
가) 훈련에 소요되는 피복, 교재, 기타 장비를 군에서 지급
나) 병영훈련 기간 중 사관후보생의 신분예우
다) 성적이 우수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후보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라) 후보생 합격자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 145~300만원
2) 장교로 임관 후
가) 장교로서 최단기간 복무(2년 4개월) 후 사회 진출
나) 동급공무원 중 최고의 급여
다) 미혼 시 독신자 숙소 / 결혼 후 군 아파트 제공
라) 복무 중 해외유학기회 부여(장기 지원자)
마) 군위탁장학생으로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 가능(장기지원자)
바)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 함양
3) 전역 후
가) 학군사관 후보생 입단과 동시에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 55여 년의 역사와 약 18만여 명의 동문이 사회 각 계층에 분포
나) 사회전반에 ROTC 선호로 전역 후 높은 취업률 및 리더십을 고려 우대

라. 군사학 교육과정 및 방침

1) 학교교육 : 분대전투, 독도법, 정신교육, 인성교육 등 주 6시간 / 학기별 12주 실시(3학점)
2) 병영훈련
가) 기초군사훈련/동계입영훈련 2주, 하계입영훈련 4주

마. 병과분류

1) 학군사관 출신 장교는 법무, 군의, 치의, 군종병과를 제외한 모든 병과의 장교가 될 수 있음
2) 학군단장은 개인의 전공과목, 자격증, 군사학 성적, 신체조건, 희망병과를 고려하여 심의 후 병과분류 상신
3) 학생군사학교장은 각 학군단에서 상신한 자료에 의거 병과별 소요를 고려하여 최종병과 결정

2. 기타

학군사관 및 군장학생 선발, 교육, 병과분류, 임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학군단 행정실에 문의
(전화 : 02-2164-4232, FAX : 02-2164-4233)

6. 의료복지제도

1) 보건실 운영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함으로 대학교육의 능률을 높이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1) 일반질환관리

증상에 따른 투약, 상처치료 및 부상처치와 안정실을 운영한다.

(2) 응급질환관리

즉각적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확인하며 추후관리한다.

(3) 성인병관리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며 정상치가 아닌 경우 자가관리 및 진료를 권유한다.

(4) 보건교육

상태에 따른 건강관리를 개별적으로 조언하고 건강정보를 게시한다.

(5) 전염병관리

신입생이 입학 시 학부(과) 사무실과 국제관운영팀에 제출한 결핵검사결과지를 확인하며 처음 검사에서 이상이 의심되면 재검하도록 조치하고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추후관리한다.

전염병 유행시 교육부장관령에 따라 관리한다.

(6) 수유실관리

모유수유를 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편안한 착유공간을 제공한다.

(7) 금연클리닉

원미보건소에서 파견한 금연상담사와 개별면담(이산화탄소 농도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금연행동수정요법 교육, 6개월간의 추후관리)을 받도록 관리한다.

2학기 중간고사 다음 수요일부터 5주간 4회 면담을 실시한다.

(8) 학생상해보험관리

재학생이 교내 또는 대학이 지원하는 외부행사에서 다친 경우 상해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보험 신청에 관하여 안내한다.

상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에 대하여 여섯 종류의 보험금 신청서류를 보험회사로 등기우송하며 보험금과 지급일을 확인한다.

(9) 비상약품관리

특정부서에 비치하는 약품 및 행사에 필요한 비상약품을 제공한다.

2) 의료비 감면

본교 8개 부속병원에서 진료 시 접수료 100%, 진료비 의료수가의 30%를 감면 받는다.

감면이 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있으며, 재학 중인 학생과 공익근무 중인 휴학생에게 감면이 적용되고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은 제외된다.

병원명	주 소	대표전화번호	구비서류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1661-7575	감면번호
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1588-1511	감면번호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감면번호
성바오로병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	02) 958-2114	감면번호
부천성모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1577-0675	감면번호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031) 249-7114	재학증명서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042) 220-9114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감면대상	감면율
- 재학생 - 일반대학원생 - 특수대학원생 - 외국인교환학생 - 공익근무 중인 휴학생	- 초진료, 재진료 100% 감면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성의교정

1. 학생준칙

가톨릭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본 대학교의 이념에 따라 학생들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며 건전한 신체를 단련함으로써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준칙을 둔다.

제 1 장 신상기록부와 학생증

제1조 학생은 입학등록 완료 후 성의교정 홈페이지의 가톨릭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상기록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2조 학생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학생증을 항상 좌측 책상 위에 놓아야 한다.
제5조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우리은행 서울성모병원지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2 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제8조 학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 결사시에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단체 결사시 지도교수를 두되 본 대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회는 단체 결사가 승인된 단체에 한한다.
제11조 교내에서 광고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부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제12조 승인을 받은 모든 자치단체(동아리)는 2학기에 그 활동계획서 및 전 학기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부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생은 정당이나 정치성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학외 행사 참가

제14조 학외에서 주최되는 행사에 학생이 참가할 때에는 승인된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학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학생징계

제15조(학업성적으로 인한 징계)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는 학칙 제43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된다.

1. 의예과 및 의학과

1) 해당 교과목(단위과정) 유급은 최종 재시험에서도 각 교과목(단위과정)별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2) 출석 미달 유급은 매 교과목 담당교수(단위과정 책임교수)가 인정한 정단한 사유 없이 1/4를 초과 결석하면 유급 처리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불응할 경우에는 유급 처리한다.

4) 학점미달 유급은 70점 미만인 학점의 단위 수(통과/미통과로 평가하는 과정 포함)가 학년별 총 학점의 1/3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학년말에 결정한다.

5) 유급은 의예과의 경우 1회, 의학과의 경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의학전문대학원생 및 2009학년도 의학과 1학년생부터 의전원 학사시행세칙 및 성적처리내규 적용)

2. 간호학과

1) 학기말 재시험 결과 70점 미만인 교과목이 있는 자

2)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제16조(부정행위로 인한 징계) 학칙 제40조에 의거 학점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1개월 이상 무기정학)하며 해당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을 통하여 득점할 수 없다.

제17조(무단 장기결석자의 처벌) 학칙 제37조에 의거 해당 학기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되는 수도 있다.

제18조(미등록에 대한 처벌)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되는 수가 있다.

제19조(성행이 불량한 자에 대한 처벌) 교내외에 폭행을 자행함으로써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는 학칙 제71조에 의거 퇴학 또는 기타 처벌을 받는다.

제 5 장 휴학,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중 납입금

제20조(휴학) 휴학은 일반휴학, 입대휴학으로 구분되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입대휴학은 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21조(일반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 제21조에 의거 소정 휴학원을 제출하여(교의 진단서 첨부) 휴학할 수 있다(가사로 인한 휴학은 학년초 등록기간에 한한다).

단, 미제출자는 제적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학칙 제49조에 의거 휴학한 자는 다음 학기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22조(입대휴학) ① 학기 도중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병무청장)를 첨부하여 학칙 제23조에 의거 소정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제적된다.

② 입대휴학자는 학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납입금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학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년초 30일을 초과하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3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학칙 제24조에 의거 소정 복학원에 건강진단서(질병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1) 군제대로 인한 복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2) 일반 휴학자가 기간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는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학자는 학칙 제49조에 의거 당해 학기부터 납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재입학) ① 퇴학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학칙 제19조에 의거 퇴학 후 2년을 경과치 않은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학칙 제19조와 제17조, 제16조에 의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는 당해 학과 신입생과 동일한 납입금을 1년간 납부해야 한다.

제25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25조에 의거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학칙 제26조).

제 6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26조 학적부의 기재사항이 호적부상과 틀릴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추가시험·재시험

제27조(추가시험) 학칙 제39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있는 바 소정원서에 사유서를 첨부(질병시에는 교의의 건강진단서 첨부)하고 학년 지도교수를 경유한 후 사유발생 3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학년말 성적이 D급일 때는 부총장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나 학년말의 재시험은 당해 학년에서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의 1/3 이내에 한하여 재시험 자격을 준다.

제 8 장 학생생활 지도

제29조(교목실) 본 대학교 성의교정의 교목신부 밑에 교목실을 두고 이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학생의 건강상담) 본 대학교 성의교정에 교의를 두고 학생의 건강상담에 응하며 의료 보험 혜택 또는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는다.

제31조(신상기록부 입력) 학칙 제14조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입학등록 완료 후 성의교정 홈페이지의 가톨릭종합포탈정보시스템에서 신상기록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교수) 각 학년에 지도교수를 두고 학생의 지도를 담당한다.

제33조(장학금관리)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 관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취급하며, 이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① 교내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 함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의 교직원, 동창생, 학생 또는 외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말하며 인쇄물 게시,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 및 확성기의 사용 등 높은 소리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사지원팀에 비치된 집회행사 승인신청서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회하여야 한다).

②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의 책임자는 집회 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회가 끝난 후 즉시 부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위의 계획서 제출 및 보고는 문서로 학사지원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5조 교내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를 게시코자 할 때에는 게시원(소정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기간은 1주일로 한다.

제36조 게시용지 규격은 25cm×45cm(신문지 1면)의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부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7조 외부기관 또는 개인이 광고, 게시, 인쇄물 배포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동아리 등록은 소정등록신청서 1부, 지도교수취임동의서서 1부, 회칙 1부, 활동실적보고서 1부, 당해년도 활동계획서 1부, 회원명부 1부를 제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일체의 행사를 금한다.

제39조 본 준칙을 위반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다.

부 칙

1. 본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교학위원회, 주임교수, 지도교수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준칙(제15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학생준칙 시행세칙

제 1 장 신상기록부, 학생증

제1조 신상기록부는 입학 시에 1부 출력하여 영구보존 한다.
제2조 학생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증 재발행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2 장 단체, 게시, 인쇄물 배포

제4조 ① 본 교정에서의 단체의 범위는 학칙 제91조 단체에 한하며 그 구성요원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집회(행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회 예정 3일 전까지 지도교수 경유 부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관이 허락되는 강당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실 및 강의실(이하 "강당"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의 행위가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학교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이를 금지 또는 취소한다.

3. 장학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

제2조(적용범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이하 "성의교정"이라 칭함)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 사무 취급에 관하여는 별정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에서 별정의 규정이라 함은 장학금 지급 단계에서의 특정한 지급 조건을 말한다.[개정 2009.3.1]

제3조(선정대상) 본 교정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3.1.]

1. 입학생 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가정의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극히 곤란한 자
4.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5. 동문회, 공공기관 또는 외부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자
6.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7. 본 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
8. 교내 특정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로봉사한 자
9. 각급 학교 교직에 봉직하는 시, 도, 군 교육회원 본인 및 자녀
10.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9.3.1]

제4조(지급액) ①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의무부총장이 정한다.[개정 2009.3.1.]

②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신설 또는 지급 중단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시는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가감 관리한다.[개정 2009.3.1]

제5조(심의기구 및 기능) ① 성의교정의 장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09.3.1.]

② 성의교정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3.1.]

1.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장학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학생의 선발 심의 및 추천
4. 장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장학에 관한 기타 주요사항

제6조(선정순위) 장학금 선정순위는 별정의 규정이 없는 한 신청자 중에서 교내장학금 시행지침에 따라 장학사정위원회의 추천의뢰를 거쳐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1994.2.8, 2009.3.1]

제7조(성적) 신입생은 입학시험 성적, 재학생은 전학년도의 성적(간호대학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직전학기 성적)을 말하며, 성적표 발행은 관례에 따라 교부한다.[개정 2009.3.1]

제8조(신청)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14.4.17]

1. 장학금 신청서
2. 전 학년도 성적증명서(단, 제3조 제3호 대상자는 제외, 간호대학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개정 2009.3.1.]

3.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

4. 기타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9조(적격여부조사) 학사지원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결과 자료를 성의교정 장학위원회 심의에 회부한다.[개정 2009.3.1, 2014.4.17]

제10조(지급기간)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적우수 장학금은 1년간 지급한다.(간호대학은 2008학년 신입생부터 한 학기만 지급)[개정 2009.3.1]

제11조(지급방법) 각종 장학금은 납입금 등록시 등록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정의 규정에 따라 기 등록을 필한 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2.8]

제12조(교외 장학금 관리) ① 교외 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대상 학생을 지정하여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학재단에서 지정한 대상자를 추천한다.[개정 2009.3.1.]

② 교외 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대상 학생을 지정하지 않고 추천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추천 조건에 따라 당해 학년 지도교수에게 의뢰, 추천을 받아 의무부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3.1.]

③ 교외 장학금은 일단 재무팀에 입금 조치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지급하도록 한다.[개정 2009.3.1]

제13조(신청제한 및 지급 중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단,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다

2.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아니 한 자

3. 휴학, 복학 또는 재입학 자 (단, 군입대 휴학자는 제외한다)

4. 학업성적이 장학생 선발 기준에 미달된 자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14조(이중지급 금지) 각종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목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회수) 장학금지급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된 자

제16조(지급절차) [삭제 2009.3.1]

제17조(취급)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의 사무는 성의교정 학사지원팀이 취급한다.[개정 2009.3.1, 2014.4.17]

제18조(장학금기부) ①성적우수 장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을 학교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장학금은 학비감면 예산에 귀속된다.

② 전항의 장학금을 기부한 성적우수 장학생에게는 학적부에 등재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기념품 수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조 신설 2009.3.1]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3.1]

제19조(기타)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3.1.]

②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1, 2, 3, 4와 같다. [신설 2017.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199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며 발효와 동시에 이전의 장학생 선발 세칙은 폐기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규정으로 개칭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의 명칭을 '성의교정 장학금 지급규정'으로 변경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9조, 제17조)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신입생 장학금 종류 〈신설 2017.12.27.〉

구분	장학금명칭	수혜대상	지급액 및 특전
정시 모집	간호대학 1%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영역 각각 1등급이면서 탐구(2과목)영역 백분위 평균 90%이상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간호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본교 자매결연 대학교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최우수 합격	합격성적 최우수자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간호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본교 자매결연 대학교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부속병원	(의예과)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자 (간호학과)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1년간 등록금의 전액(입학금 포함)
		(간호학과) 정시 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15% 이내인 자	1학기 등록금의 전액(입학금 포함)
		(의예과)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간호학과)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의예)1년간 등록금 반액(입학금 포함) (간호)1학기 등록금의 반액(입학금 포함)
수시 모집	최우수 합격	합격성적 최우수자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간호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본교 자매결연 대학교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부속병원	(의예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자 (간호학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1년간 등록금의 전액(입학금 포함)
		(간호학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15% 이내인 자	1학기 등록금의 전액(입학금 포함)
		(의예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간호학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의예)1년간 등록금 반액(입학금 포함) (간호)1학기 등록금 반액(입학금 포함)

[별표2] 교내 장학금 종류 〈신설 2017.12.27.〉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금액	수혜기간
최우수합격	합격성적 최우수자 (단, ①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② 재학년한 동안만 지급하며 정당한 휴학이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등록금 전액	6년(의대) 4년(의전원) 4년(간대)
부속병원(교내)	신입생 중 각 대학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5%, 20% 이내인 자	등록금 전액 등록금 반액	1년(의전원) 1학기(간대)
성적우수	전 학년도(학기) 성적이 일정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등록금 전액 등록금 반액 등록금 30%	1년 및 1학기
성적향상	전 전학년도(간호대학은 전 전학기) 평균 70점 이상인 자가 전 학년도(간호대학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점 이상 향상된 자(단, 타 장학금 비 수혜자로 휴학 없이 연속된 2개 학기)	100만원	1회
봉사	학생회 활동이나 학내 특수한 부서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록금 일부	1년 및 1회
학술연구	전국 학술연구발표대회 입상 또는 학내 학술연구발표 대회 최우수자(팀)	100만원(1인) 200만원(팀)	다음 학기 (1회)
옴니아(학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등록금 일부	해당 학기
옴니아(의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 일부	해당 학기
보훈(교내)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 단,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 반액 (반액은 국가보조)	12학기(의대) 8학기(간대)
통일부(교내)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 단, 직전 2학기 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는 제외	등록금 반액 (반액은 국가보조)	12학기(의대) 8학기(간대)
가족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3개 교정 학부에 재학 중일 때 저학년 학생(학번, 생년월일 순) 단, 성적이 전 학년말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타 장학금 비(非) 수혜자	등록금 반액	해당 학기
가홍이	입학 후 가홍이(가톨릭대학교 홍보 도우미)모집에 선발된 자	학기당 30만원	홍보활동 시
국가근로(대학)	입학 후 특정한 부속기관(부서)에서 근로하는 자	근로시간에 따름	-
생활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의 수급자(새터민 포함 포함)	학기당 180만원	자격유지 시
글로벌	해외대학 연수생【예: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생】	1인당 (40~100)만원	1회
장애학생	장애 1~4급 이상으로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등록금 일부	해당 학기

[별표3] 교외 장학금 종류 〈신설 2017.12.27.〉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1	KSD나눔재단	성적우수	40	서울대교구	가계곤란
2	정수장학회	성적우수	41	영진 장학	가계곤란
3	일범청람	성적우수	42	우제 장학	가계곤란
4	한국지도장육성장학	성적우수	43	위드팜 생명존중	가계곤란
5	국가근로	학생조교/인턴십	44	유한재단	가계곤란
6	KRX국민행복재단	가계곤란	45	송악 장학	가계곤란
7	Peacemakers 장학	가계곤란	46	율리아(유순석)장학	가계곤란
8	故고수미장학	가계곤란	47	의대11회 동문	가계곤란
9	沁德김갑식동문장학	가계곤란	48	의대26회 동문	가계곤란
10	국가장학금 유형Ⅰ	가계곤란	49	의대27회 동문	가계곤란
11	국가장학금 유형Ⅱ	가계곤란	50	의대28회 동문	가계곤란
12	글로벌성형외과	가계곤란	51	의대30회 동문	가계곤란
13	간대22회 동문	가계곤란	52	의대 동창회 장학	가계곤란
14	거봉장학	가계곤란	53	이계실 장학	가계곤란
15	경동송천재단	가계곤란	54	이선량 장학	가계곤란
16	김난자 장학	가계곤란	55	미래인재육성재단	가계곤란
17	김진규 다니엘 장학	가계곤란	56	익명장학	가계곤란
18	내과연구재단	가계곤란	57	이철동문장학	가계곤란
19	단일시스템	가계곤란	58	조규철 장학	가계곤란
20	돈암장학회	가계곤란	59	조봉숙 장학	가계곤란
21	류덕희 장학	가계곤란	60	종익장학	가계곤란
22	미래의동반자재단	가계곤란	61	최선자 동문장학	가계곤란
23	보바스기념병원	가계곤란	62	추강 장학	가계곤란
24	보스코	가계곤란	63	캐쉬백포인트 장학	가계곤란
25	백송장학	가계곤란	64	하림장학	가계곤란
26	서울희망장학	가계곤란	65	한국쉐링(주)	가계곤란
27	성의카페안젤로 장학	가계곤란	66	한독제석재단	가계곤란
28	서송재단	가계곤란	67	한우리 장학	가계곤란
29	송파재단	가계곤란	68	한윤복 장학	가계곤란
30	신천동 성당	가계곤란	69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가계곤란
31	CMC신용협동조합	가계곤란	70	혜춘장학	가계곤란
32	심봉섭-송승일 동문	가계곤란	71	해원장학	가계곤란
33	아산사회복지재단	가계곤란	72	후배사랑	가계곤란
34	안로사봉사장학	가계곤란	73	흰나리	가계곤란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35	양기섭 신부장학	가계곤란	74	환주장학	가계곤란
36	양영재단	가계곤란	75	필로메나	가계곤란
37	어도장학	가계곤란	76	KAMC해외연수장학	기타
38	오귀임 장학	가계곤란	77	김한종-가톨릭 의대,간대 산악부	기타
39	우덕재단	가계곤란	78	박인태-정금자	기타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79	메가스터디팀플	기타			
80	보훈	기타			
81	주상용 외과장학	기타			
82	통일부	기타			
83	군위탁	기타			
84	장준환 동문장학	기타			
85	부산서구장학회	지역출신			
86	백운장학회	지역출신			
87	남양주 장학재단	지역출신			
88	과천시 애향장학	지역출신			
89	서귀포시 장학	지역출신			
90	양산시 인재육성장학	지역출신			
91	포천시인재장학	지역출신			
92	창원시진해장학	지역출신			
93	인천시인재육성장학	지역출신			
94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지역출신			
95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지역출신			
96	경기도민회장학	지역출신			
97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지역출신			
98	부천시장학회	지역출신			
99	은평구민장학재단	지역출신			
100	서울제주도민회장학금	지역출신			
101	종로구장학회	지역출신			

[별표4] 국가장학금 종류 〈신설 2017.12.27.〉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선발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분위 0~8분위 해당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책정	한국장학재단 선발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II유형	소득분위 0~8분위 해당 재학생 * 셋째 아이 이상 우대	본교 별도 책정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별도 선발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4. 학생병사안내

1) 재학생 입영연기

가. 입영연기 대상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한연령(의과대학 27세, 의학전문대학원 28세) 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나. 입영연기 제한

① 퇴학, 제적된 자
②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③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 연기절차

①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②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장에 입영연기신청서를 출원하면 연기 처리

2) 학적변동자

입영연기 중인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를 하며,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 충원 계획에 따라 입영시키게 된다.

가. 제적, 퇴학된 자
나.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자
다. 복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자 : 학적변동으로 통보된 자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학하거나 다른 학교에 편입학하여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통보에 의거 다시 재학 입영연기 처리(입영하였다가 귀향한 자도 같음) 된다.

3) 입영(소집)원 출원

가. 대학 재학 중 군 입영(소집)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하여야 된다. 현재 재학생으로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 입영하면 입영 대기기간이 단축된다.

① 출원기간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②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사이버민원실 - 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③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서류 바로가기 -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나.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자 처리

입영원 출원자는 본인의 희망시기에 입영 조치하되, 입영 희망시기가 출원일로부터 너무 빠르면 군 입영 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영 희망시기

입영 희망시기는 입영(소집)원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희망시기를 정하도록 하며,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단, 19세인 자는 입영 희망시기를 다음과 같이 별도 관리한다.

※ 10월 31일까지 출원자 : 당해년도 일반자원과 같이 처리하되 입영(소집)원 출원시 입영희망시기를 다시 반영

※ 그 이후 출원자 : 별도 입영(소집)원 출원자로 처리

4) 입영일자의 연기절차

가. 출원대상

재학생 입영 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자 제외)

사유별	증빙서류
• 타 대학 편입학 • 유학 • 장학생선발 • 폐교(과) • 학군무관후보생 지원	• 학교장 확인서
• 본인 질병	• 진단서
• 부모 병간호	• 진단서 및 주민등록표
• 학업 계속	• 재학증명서
• 군지원	• 수험표 사본
•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	• 본인 및 친권자의 사실 확인서 • 기타 필요한 증명서

나. 출원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사이버민원실 - 재학생입영신청서(취소,변경)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5) 병역처분변경원

병역처분변경원(구. 특수전면역원)은 입영이 결정되어 영장이 나오려는 상태에서 특수한 사정(사고,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재학 중에는 제출불가)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주소지 시, 구, 군,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첨부서류 : 병사용진단서)

6)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가. 의무사관후보생(병역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121조 및 병역법 제34조)

(1) 지원자격

가)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중 의·치·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인턴(기초교실포함)으로 채용된 사람중 33세가 되는 해 2월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지원절차

수련기관별로 취합하여 매년 2월경에 병무청장에게 제출

(3) 구비서류

가) 해당년도 의무사관후보생(인턴)지원자 명단

나)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5번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

다) 신원진술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부(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27번 신원진 술서)

(4) 병적편입 통보

가) 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수련기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나) 수련기관의 장은 선발결과를 본인에게 통지

(5) 입영 신체검사

가) 입영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며 병명과 질병상태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귀가자 명부 등을 지방병무청장에 보고

나)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 치유 기간 필요시 귀가 조치됨.

나. 공중보건의사 지원절차

(1) 지원자격

가) 의·치·한의사 자격을 가진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

(2) 지원절차

국시 발표일로부터 매년 2월 10일까지 출신학교장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또는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직접 지원

(3) 구비서류

가) 해당년도 공중보건의사 지원자 명단

나)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4번 공중보건의사 지원서)

다)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는 신원진술서 작성 불필요.

(4)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해야 하며,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5) 벌칙

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형사처벌 후 잔여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나)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이탈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 연장 근무

현역 · 대체 복무지원서

※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급 급	역종 [ ] 현역 [ ] 보충역

국적관계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 (외국국적 국가명 :)	[ ] 외국국적 (외국국적 국가명 :)

학력사항	구분	학교명	전공학과	학교 소재지	입학연월	졸업(수료예정) 연월	학업 상태
	대학교						[ ]재학 [ ]퇴학 [ ]수료 [ ]졸업
	대학원						[ ]재학 [ ]퇴학 [ ]수료 [ ]졸업

지원사항	의무 ·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계열 : [ ]의과 [ ]치과 [ ]한의과)** [ ]법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수의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5급 공채 구분( )	소속 부처(전화:)
	대체복무	[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병역법」 제34조 · 제34조의6 · 제34조의7 ·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현역 · 대체복무를 지원하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현역의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지원자 제출서류	1. 의무 ·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2.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 없음 3.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없음. 다만,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련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무 ·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처리절차 안내

(뒤쪽)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현역 대체복무 지원서 (병역법 제58조, 제59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작성요령	1. □ 표는 V로 표시 2. 신청일자, 본인성명,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1. 의무사관후보생 - 신원진술서 1부. 2. 법무사관후보생 - 신원진술서 1부. 3.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 없음 4.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 없음, 단,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의사 지원시 수련이수증명 첨부 5. 공익법무관 -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 제출(경유)기관 / 처리기관 / 병무청 신청서 작성 ➡ 해당기관 ➡ 접 수 • 수련기관의장 • 사법연수원장 • 국회사무처장 • 법원행정처장 • 행정자치부장관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출신(재학)대학의장 (공중보건의사) ⬇ 검 토 ⬇ 결 재 결 재 ⬅ 결과 통보 ⬅ 결과 통보

5. 의료복지제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의를 두고 건강상담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과 학생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지정된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의료복지 제도가 있다.

교의 : 성의교정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창욱 교수

1) 정기 신체검사

① 대상 : 신입생을 제외한 전 학년
② 시기 : 매년초 소정기간 중에 실시
③ 장소 : 서울성모병원 기업건강증진센터(별관 2층)
④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비 고
기 본 검 사	신장, 체중, 시력, 혈압	
흉 부 X 선 검 사	직접 촬영	
검 사	• 청력검사 •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혈색소, 간기능 AST, ALT)	

2) 진료비 감면혜택

① 지정 병원 : 가톨릭대학교 8개 부속병원
② 이용절차 : 해당과에 초진일 경우 제1,2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와 “진료비 감면번호”를 학생증과 같이 수납창구에 제시해야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③ 혜택 : 학생들은 다음 표와 같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보 험 환 자	일 반 환 자
초진료, 재진료 100%	초진료, 재진료 100%
급여 항목 30%	비급여 항목 30%(진료목적일 경우)

3) 재학생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

※ 담보위험
① 학내·외 치료비 추가특별약관(보상한도액 : 1사고당 / 2백만원)
우리 대학교 학생이 학교 활동 중 학교 내외(국내만 해당)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그 치료비에 한해 보상하는 보험
② 신입생 담보 : 입학 전인 신입생들의 학교 행사 중 사고에 대해 치료비 보상